#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8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신정훈·박정현·박용갑

정준호 • 이해식 • 채현일

서미화 · 한민수 · 김기표

박홍근 • 진선미 • 차지호

용혜인 • 천준호 • 서영교

유건영•박 정•김남희

임미애 · 김영환 · 부승찬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 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를 "사회복지법인등["로, "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를 "법인 ·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5에서 "장 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이 있는 경우 부과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면) ① ~ ④ (생 략)	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	5
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u>사회복지법인등(</u> 「장애인활동	사회복지법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	
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에	<u>법인·단체(이하 이 조 및</u>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	제22조의5에서 "장애인활동지
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원기관"이라 한다)]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	
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	<u>.</u>
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	
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2조의5(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장애인활
	동지원기관은 2020년 1월 15일
	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

된 등록면허세(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이 있는 경우 부과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하나한다.